

##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적격 미국 비시민

적격 미국 비시민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영주권을 부여 받은 비시민, 또는
- INA 제 208 조에 따라 망명이 허용된 자, 또는
- INA 제 207 조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난민, 또는
- INA 제 212(d)(5)조에 따라 최소 1 년 동안 미국으로 가석방된 자, 또는
- 1997 년 4 월 1 일 이전에 발효된 INA 의 제 243(h)조에 따라 추방이 보류된 외국인 또는 INA 의 제 241(b)(3)조에 따라 추방이 보류된 자, 또는
- 1980 년 4 월 1 일 이전에 발효된 INA 의 제 203(a)(7)조에 따라 조건부 입국이 허가된 자.
- 1980 년 난민교육지원법(Refugee Education Assistance Act of 1980) 제 501(e)조에 정의된 쿠바인 또는 아이티인 입국자, 또는
- 특정 학대 피해자인 비시민 또는 8 U.S.C. 1641(c)에 정의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비시민, 또는
- 이민 국적법 제 289 조 규정을 적용받는 캐나다 출생 북미 인디언, 또는
- 인디언 자기결정권 및 교육 지원법(25 U.S.C. 5304(e)) 제 4(e)조에 정의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연방 정부 인정 인디언 부족 구성원, 또는
- 1996 년 개인책임 및 근로 기회 화해법(8 U. S. C. 1612(a)(2)(A)(V))의 제 402(a)(2)(A)(i)(V)조에 설명된 아메라시안 이민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허용된 자, 또는
- 특정 흐몽이나 하이랜드 라오스 부족 일원, 또는
- 미국 군대에서 훈련을 위한 복무 외의 현역 군 복무, 또는 그 배우자,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 배우자 또는 그러한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가 적격 미국 비시민인 경우 그러한 미국 비시민의 미혼 피부양 자녀, 또는

- 자격을 갖춘 미국 비시민으로서 참전용사이고 (1) 소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미군에서 제대하거나 (2) 뉴욕주 행정법(New York State Executive Law) 제 350 조에 정의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군대에서 나쁜 행동이나 불명예스러운(소외에 의한 것이 아님) 것 이외의 이유로 제대하거나 (3) 뉴욕주 행정법 제 350 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LGBT 퇴역 군인이며 나쁜 행동 또는 불명예스러운(소외에 의한 것이 아님) 것 이외의 이유로 미국에서 제대한 개인 또는 그 배우자,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 배우자 또는 미혼 피부양 자녀(이러한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가 유자격자인 경우), 또는
- 인도주의적 아프가니스탄인 가석방 대상자로서 이민 국적법 제 212(d)(5)(A)조에 따라 (1) 2021년 7월 3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미국으로 가석방되었거나 (2) 2022년 9월 30일 이후 미국으로 가석방된 자 및: (a) 2021년 7월 3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가석방된 아프가니스탄 피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b) 2021년 7월 3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가석방된 부모 비동반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 또는
- 개정된 2000년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로부터 증명서 또는 자격 통지 서한을 받은, 심각한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 또는
- 인도주의적 우크라이나인 가석방 대상자로서 이민 국적법 제 212(d)(5)조 또는 8 U. S. C. 1182(d)(5)에 따라 (1) 20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9월 30일 사이에 미국으로 가석방되었거나 (2) 2023년 9월 30일 이후 미국으로 가석방된 자 및: (a) 20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9월 30일 사이에 미국으로 가석방된 우크라이나 시민이나 국민 또는 직전에 우크라이나에 거주했던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b) 20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9월 30일 사이에 미국으로 가석방된 우크라이나 시민권자 또는 국민이었던 부모 비동반 자녀의 부모, 법정 보호자 또는 주 간병인, 또는
- 이민 국적법 제 101(a)(27)조 또는 2009년 아프간 동맹국 보호법(AAPA) 제 602(b)(1)조/2006년 국방수권법(NDAA) 제 1059(a)조에 따라 특별 이민 지위를 부여 받은 이라크 및 아프간 국민.